

예치가맹금 지급보류 요청서

※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3일
신청인	상 호(가맹점명)				
	성명(대표자)				
	주 소(사무소)			전 화 번 호	
가맹본부	상 호(영업표지)				
	성명(대표자)				
	주 소(사무소)			전 화 번 호	
보류사유	☐ 제 소(提訴)		☐ 알 선 신 청		☐ 조 정 신 청
	☐ 중 재 신 청		☐ 공 정 위 신 고		☐ 기 타
예치가맹금	₩ (금 원 정)				
예치번호/예치일	/				

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5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10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 지급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예치기관의 장
(지점장) 귀하

첨부서류	보류사유를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		
1.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가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. 다만, 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의 지급요청을 거부하거나 가맹본부에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해야 합니다.		
2.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 등의 결과나 시정조치 결과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의 지급 또는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.		
3.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아 예치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.		